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

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: 구자근 · 정희용 · 조경태

김용판 · 김석기 · 임이자

안병길 · 강기윤 · 이양수

김승수 · 김영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, 동 제도 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% 감면하고, 이후 2년간 50%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% 감면과 3년간 50%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. 참고로,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 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 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4년"을 "5년"으로, "2년"을 "3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4년"을 "5년"으로, "다음 2년"을 "다음 3년"으로 한다.

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 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아 정 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-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---2025년 12월 31일-----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)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 1. • 2. (생 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 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 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)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 장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 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)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

세연도(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 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 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)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 장(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 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)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(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

5 <u>년</u>
<u>3ध</u>
③

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(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 제1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수 있다.

5 <u>년</u>
<u>각</u>
<u>음 3년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
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1.•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